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송재혁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 521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송재혁 의원 (1명)

찬 성 자: 이병도, 임종국, 박상구,

고병국, 송아량, 오현정, 문장길, 김광수, 김제리, 이현찬, 이은주, 한기영, 이동현, 김호평, 이세열,

채유미 의원 (16명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자치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안 제3조)
- 나. 시장의 책무, 기본계획,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~안 제6조)

다. 사업의 범위,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 민자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찾아가는 동주민센터"(이하 '찾동'이라 한다)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.
- 2. "지역의 사회보장"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주민 자치"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, 공론,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.
- 4. "마을 공동체"란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한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찾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.

- 1. 찾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.
- 2. 찾동은 인권에 기반 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, 지역중심·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.

- 3. 찾동은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무성을 최우선으로 전제하며 그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투입 등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4. 찾동에서 주민은 지역의 공공의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, 동 단위 협치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은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필요한 인적 · 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
 - 2.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
 - 3. 시·구·동간 또는 민·관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
 - 4. 그 외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5조(기본 계획 등) ① 시장은 찾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·지원하기 위하여 찾동 운영 기본계획(이하'기본계획'이라한다)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정책의 기본 방향
 - 2. 운영 및 지원체계
 - 3.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
 - 4. 자원의 확보 및 배분
 - 5.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찾동 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 - 1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찾동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 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(행정, 혁신, 여성, 복지, 건강) 실본부국장을 당연 직으로 하고.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 - 1. 행정, 주민자치, 여성, 복지, 건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 - 2. 서울특별시 자치구 부구청장
 - 3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 의원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찾동 정책의 심의·자문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 - 2.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나, 품위손 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제7조(사업의 범위) ① 찾동 사업은 지역의 사회보장증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복지·건강·여성·마을·자치·행정 등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부서 간에 협력한다.
- ②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, 빈곤·소외·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, 보편적 복지·돌봄·건강 정책의 추진과 복지 안전망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 사업 등을 지원한다.
- ③ 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, 골목단위의 주민 공론장 조성,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.
- 제8조(비용의 지원) ①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, 활동 등에 필요 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사 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〈부 칙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